서귀포시 모슬포 라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동산원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청약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u>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7.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5.**)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	급	
선정사역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소득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0	0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0	0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기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9월 27(월)	9월 28일(화)	10월 05일(화)	10월 18일(월)~10월 2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_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7.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건축과-59086호(2021, 9,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17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6층, 1개동 총 46세대 중 **일반공급 46세대** (2021. 3. 9.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준공) 처리 완료)

■ 입주시기 : 즉시(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Ι

주택		주택 형			주택공급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분양
구박	주택관리번호	구락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	면적 (㎡)	대지지분 (㎡)	세대수	세대수
	2021000672	054.9400A	54A	054.9400	010.0200	064.9600	028.3600	093.3200	045.8000	1	1
	2021000672	084.1400A	84A	084.1400	012.2600	096.4000	043.6700	140.0700	070.0200	6	6
	2021000672	084.2700B	84B	084.2700	012.1900	096.4600	043.7400	140.2000	070.1300	6	6
	2021000672	084.4800C	84C	084.4800	012.4400	096.9200	043.8400	140.7600	700.3000	6	6
민영주택	2021000672	084.9800D	84D	084.9800	013.0000	097.9800	044.1000	142.0800	700.7200	6	6
2875	2021000672	085.0000A	85A	085.0000	012.4800	097.4800	044.1100	141.5900	070.7400	4	4
	2021000672	088.6900A	88A	088.6900	014.8500	103.5400	046.0200	149.5600	073.8000	5	5
	2021000672	103.7800A	103A	103.7800	016.0400	119.8200	053.8500	173.6700	086.3700	6	6
	2021000672	104.6100A	104A	104.6100	016.3600	120.9700	054.2800	175.2500	087.0500	6	6
				Ē	합 계					46	46

■ 상기주택중 국민주택 85㎡이하 주택은 부가세면세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등 공용면적 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 됨.

■ 주택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조태청/륜\	타입	*	1111	대수		공급		계약금(20%)	잔금(80%)	
주택형(㎡)	다입	층	All	네구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Я	계약시	입주일
054.9400A	54A	1층	1	1	43,540,000	255,690,000		299,230,000	59,846,000	239,384,000
		1층	1		66,680,000	308,480,000		375,160,000	75,032,000	300,128,000
		2층	1		66,680,000	317,740,000		384,420,000	76,884,000	307,536,000
084.1400A	84A	3층	1	6	66,680,000	326,990,000		393,670,000	78,734,000	314,936,000
004.1400A	04/4	4층	1	0	66,680,000	339,330,000		406,010,000	81,202,000	324,808,000
		5층	1		66,680,000	351,670,000		418,350,000	83,670,000	334,680,000
		6층	1		66,680,000	501,900,000		568,580,000	113,716,000	454,864,000
		1층	1		66,780,000	308,680,000		375,460,000	75,092,000	300,368,000
		2층	1		66,780,000	317,940,000		384,720,000	76,944,000	307,776,000
084.2700B	84B	3층	1	6	66,780,000	327,200,000		393,980,000	78,796,000	315,184,000
		4층	1		66,780,000	339,540,000		406,320,000	81,264,000	325,056,000
		5층	1		66,780,000	351,890,000		418,670,000	83,734,000	334,936,000

		6층	1		66,780,000	502,210,000		568,990,000	113,798,000	455,192,000
		1층	1		66,940,000	319,450,000		386,390,000	77,278,000	309,112,000
		2층	1		66,940,000	328,760,000		395,700,000	79,140,000	316,560,000
084.4800C	84C	3층	1	6	66,940,000	341,160,000		408,100,000	81,620,000	326,480,000
004.40000	04C	4층	1		66,940,000	350,470,000		417,410,000	83,482,000	333,928,000
		5층	1		66,940,000	359,770,000		426,710,000	85,342,000	341,368,000
		6층	1		66,940,000	501,510,000		568,450,000	113,690,000	454,760,000
		1층	1		67,340,000	297,860,000		365,200,000	73,040,000	292,160,000
		2층	1		67,340,000	307,270,000		374,610,000	74,922,000	299,688,000
084.9800D	84D	3층	1	6	67,340,000	316,680,000		384,020,000	76,804,000	307,216,000
004.90000	04D	4층	1		67,340,000	329,220,000		396,560,000	79,312,000	317,248,000
		5층	1		67,340,000	338,620,000		405,960,000	81,192,000	324,768,000
		6층	1		67,340,000	501,660,000		569,000,000	113,800,000	455,200,000
		3층	1		67,360,000	318,180,000		385,540,000	77,108,000	308,432,000
085.0000A	85A	4층	1	1	67,360,000	327,540,000		394,900,000	78,980,000	315,920,000
005.0000A	OSA	5층	1	4	67,360,000	340,020,000		407,380,000	81,476,000	325,904,000
		6층	1		67,360,000	490,990,000		558,350,000	111,670,000	446,680,000
		2층	1		70,280,000	410,850,000	41,085,000	522,215,000	104,443,000	417,772,000
		3층	1		70,280,000	420,790,000	42,079,000	533,149,000	106,629,800	426,519,200
088.6900A	88A	4층	1	5	70,280,000	434,040,000	43,404,000	547,724,000	109,544,800	438,179,200
		5층	1		70,280,000	443,980,000	44,398,000	558,658,000	111,731,600	446,926,400
		6층	1		70,280,000	552,330,000	55,233,000	677,843,000	135,568,600	542,274,400
		1층	1		82,240,000	371,930,000	37,193,000	491,363,000	98,272,600	393,090,400
		2층	1		82,240,000	391,100,000	39,110,000	512,450,000	102,490,000	409,960,000
103.7800A	103A	3층	1	6	82,240,000	402,600,000	40,260,000	525,100,000	105,020,000	420,080,000
103.7600A	103A	4층	1	0	82,240,000	410,270,000	41,027,000	533,537,000	106,707,400	426,829,600
		5층	1		82,240,000	421,770,000	42,177,000	546,187,000	109,237,400	436,949,600
		6층	1		82,240,000	509,960,000	50,996,000	643,196,000	128,639,200	514,556,800
		1층	1		82,890,000	383,240,000	38,324,000	504,454,000	100,890,800	403,563,200
		2층	1		82,890,000	402,590,000	40,259,000	525,739,000	105,147,800	420,591,200
104 61004	104A	3층	1	6	82,890,000	410,340,000	41,034,000	534,264,000	106,852,800	427,411,200
104.6100A	104A	4층	1	6	82,890,000	421,950,000	42,195,000	547,035,000	109,407,000	437,628,000
		5층	1		82,890,000	433,560,000	43,356,000	559,806,000	111,961,200	447,844,800
		6층	1		82,890,000	529,560,000	52,956,000	665,406,000	133,081,200	532,324,800
			46	46	3,261,600,000	17,669,280,000	735,086,000	21,665,966,000	4,333,193,200	17,332,772,8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 발코니 확장위치

주택형	타입	확장위치	주택형	타입	확장위치	주택형	타입	확장위치
113.7800A	113A	거실, 안방, 방2, 방3, 주방	084.4800A	84A	거실, 안방, 방2, 방3	084.2700D	84D	거실, 안방, 방2
114.6100A	114A	거실, 안방, 방2, 방3	084.9800B	84B	거실, 방2, 방3	085.0000A	85A	거실, 안방, 방2
088.6900A	88A	거실, 안방, 방2, 방3	084.1400C	84C	거실, 안방, 방2	054.9400A	54A	거실, 방1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분양사무소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서 본 공급물건은 준공후 분양으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전기실등이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 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금융기관지정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 하지 아니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지정된 계좌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 됨.
-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함.
-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고를 하여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독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독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П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점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입력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은행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05.04)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OLHLAD	1순위	2021.09.27(월) 08:00~17:30	. 이디네 원야 /PO 때는 사람들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1.09.2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흠"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은 또는 영조주은 말하)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1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②부양가족수		2명	15	6명 이상	35	↑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명	20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②のIスココネ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FIDETI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 (진디옷 중국 시에 사중 계인급)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정 점수 = ① + ② + ③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장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 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이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자개발자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점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임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반은 당점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힡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인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Ι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유의사항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이바고그	1순위	 일시: 2021.10.05.(화) 확인방법 	• 일시 - 2021.10.18.(월)~2021.10.20.(수) (10:00~16:00)
일반공급	2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견본주택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05 (화) ~ 2021.10.14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u>www.applyhome.co.kr</u>)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1.10.05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참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_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1.10.18(월)~2021.10.20(수) / 3일간	견본주택	1600-3682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소 제출[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소 제출[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MG새마을금고	9002-1971-8177-6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112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공동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근이형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서류		구비사항	
1 4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1 11/10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통	0		인감	본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00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0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흥이 과게 주면 #	₽ OI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인터넷	
			H D SLOLII		청약자는 생략)	
		0	복무확인서	복무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HOL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		
일반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O 7052758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가목판계등명서	메우자 작게본목	사항임(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0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0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0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0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무허가건물확인서	본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0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본인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기타입증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세3사 내리계약시 주가사항			인감승명서	계약사	• 세약사의 인감증명서 1동(용노 : 공농수택 세약 위임용)	

0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0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도 있으므로 지정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위탁자는 융자기관과 협약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계약자별 대출기관 변경 불가)
- 융자알선과 관련하여 시핵위탁자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시핵위탁자는 융자를 알선 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준공 후 분양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 준공 후 분양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함.

٧

유의사항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계약체결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명단관리 및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또한,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가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등 청약자격 유무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자의 계약시 공동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소명기간(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에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또는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분양권 전매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고지등)를 위해 계약체결시 2011년7월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행정안전부안내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주소가 명기된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상 연락처 등 오류. 착오기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위장전입자가 본 공동주택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주택법」제96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를 준용함

■ 공통 유의사항

-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확장비용은 분양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각 단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공용면적 및 대지면적의 차에 따라 같은 주택형이라 해도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유면적비에 따라 대지면적을 배분하였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로 면적산정 후 각각의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되었고,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등)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은 공동으로 사용하여함.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된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한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순위 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본 공동주택 단지 주변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 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변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하니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조경용조명 및 보안등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시행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사와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함

■ 분양사무소 유의사항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사무소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소. 평면도, 배치도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분양사무소의 연출용 홍보물 또는 카다록, 공급간지, 기타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홍보물의 자료는 확장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설치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바닥재,샤워부스,발코니난간대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입찰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분양사무소에 비취된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홍보물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의 홍보물 등을 카다록 및 모형의 충분한 숙지 및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내 시설에 대한 정 보를 취득하기 바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분양사무소의 모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분양사무소는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등은 일정기간 보존함
- 분양 홍보물 상의 단지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탑승위치등)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함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분양사무소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목창호 문틀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홍보물등에 표현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및 개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홍보물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람
- 각 주택형 홍보물에 표현된 주방액정TV. 조리기구 행거. 컵받침 등은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팜플렛 등을 참조바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주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 램프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보안등 등)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배치상 일부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으니, 분양홍보관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및 배치도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벽 및 세대간 벽의 접합부위 등에 따라 단열설치 및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유효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단지배치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 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든단위세대의 확장형태는 현상태를 유지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등)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공용부면적 배분은 단지 내 전체 공용부면적을 합산하여 각 세대별, 호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비율 배분 시 생기는 소수점 이하 오차부분에 대하여는 임의적용 또는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비율에 따른 면적비율배분시 생겨 날 수 있는 오차면적에 대해서는 56A타입에 임의 배분하였음
- 본 단지의 주차계획은 해당법규에 따른 주차대수산정 및 주차단위 구획을 종별로 배분한 것으로 세대 수 및 형별타입을 기준으로 주차대수산정을 하지 않음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	적 용
		건축부문 1번항목을 0.6점 이상 획득	
	│ 건축부문설계기준 │ (제7조제3항제1호)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적 용
	(417 = 4108 411 = 7	방습층 설치	적 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 용
	기계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적 용
		고효율가정용보일러	적 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효율전동기	적 용
3+N8 N8M+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 용
		절수형설비	적 용
		수변전설비 설치	미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 용
		조명설치	적 용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적 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미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 용

■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 ㈜무궁화신탁은 분양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매수인("을")은 ㈜무궁화신탁이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스모덱산업㈜("갑")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작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의무는 "갑"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하며 ㈜무궁화신탁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사업부지상에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담보신탁)가 설정되어 있는 바, ㈜무궁화신탁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갑"의 책임으로 이를 말소하는 것에 "을"은 동의한다.
- 본 분양계약에 따라 "을"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제한물권 말소 비용 포함),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황 등 분양목적물의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하며, "갑"과 ㈜라움건설("병"), ㈜무궁화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시 행 위 탁 자 : 코스모덱산업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20111-0185794)
- 시 공 자 : 주식회사 라움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2119926)
- 대리사무신탁회사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법인등록번호 : 110111-2867418)
- 분양사무소 및 분양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172 모슬포라움 201호 ☎1600-3682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본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